#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79

발의연월일: 2022. 9. 27.

발 의 자: 강선우·강민정·김성주

김윤덕 • 김홍걸 • 박 정

안규백 • 윤준병 • 정태호

진성준・최종윤・허 영

홍정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스스로 중단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아동복지시설을 중도 퇴소한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범위"를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 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업무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
	<u> </u>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
	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u>사람</u>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u>③</u>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	<u>방법</u>
<u>동의 범위</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
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
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u>탁할 수 있다.</u>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 전담기관 설치·운영 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 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 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